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4.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가. 제안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23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등 신설(안 제4조)
-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안 제5조)
- 신고체계의 마련(안 제6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안 제10조)
-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15조)
-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시설 지정 및 설치내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23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의 시설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강화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내부에서 불법촬영장치 등의 설치가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안전점검장비의 대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장하였음.

#### ○ 검토 결과

- 기존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2021.7.20.)·시행(2023.7.21.)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 242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23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등 신설(안 제4조)
- 나.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안 제5조)
- 다. 신고체계의 마련(안 제6조)
- 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안 제10조)
- 마.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15조)
- 바.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시설 지정 및 설치내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3)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가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20.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

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급상황 발생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2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5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1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 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

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제19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9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 반 사 항                              | 근거조항         | 부 과 금 액 |     |     |
|--------------------------------------|--------------|---------|-----|-----|
|                                      |              | 1차      | 2차  | 3차  |
|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 법 제21조제1항    | 100     | 150 | 200 |
|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     |     |
|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20      | 40  | 60  |
|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 10      | 20  | 30  |
|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     |     |
|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              | 10      | 20  | 30  |
|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              | 20      | 30  | 40  |
|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     |     |
|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              | 20      | 40  | 60  |
|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              | 10      | 20  | 30  |
|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10      | 20  | 30  |
|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                           |      |           |                  |              |               |                    |              |                  |              |              |     |    |  |
|---------------------------|------|-----------|------------------|--------------|---------------|--------------------|--------------|------------------|--------------|--------------|-----|----|--|
| 전 경 사 진                   |      |           |                  |              |               |                    |              |                  |              |              |     |    |  |
| 소 재 지                     |      |           |                  | 화장실 명칭       |               |                    |              |                  |              |              |     |    |  |
| 지 역 구 분                   |      |           |                  | 설 치<br>년 도   |               | 관 리 책 임<br>공 무 원   |              | 소 속              |              |              |     |    |  |
| 설 치 및<br>관리주체             | 설치주체 |           | 직 급              |              |               |                    |              |                  |              |              |     |    |  |
|                           | 관리주체 |           | 성 명              |              |               |                    |              |                  |              |              |     |    |  |
| 관 리 인                     |      |           |                  | (전화번호 : )    |               |                    |              |                  |              | 월평균 이용인원     |     |    |  |
| 규 모                       |      | 부지<br>(㎡) | 화장실<br>면적<br>(㎡) | 대변기 수        |               |                    | 소변기 수        |                  | 대변기유형        |              | 사용료 |    |  |
|                           |      |           |                  | 남            | 여             | 장애인                | 성인용          | 유아용              | 동양식          | 서양식          | 유료  | 무료 |  |
|                           |      |           |                  |              |               |                    |              |                  |              |              |     |    |  |
| 편의시설 내역                   |      | 세면<br>시설  | 난방<br>시설         | 냉방<br>시설     | 환풍<br>기       | 화장지<br>(자동<br>판매기) | 비누           | 수건<br>(에어<br>타올) | 탈취제<br>(방향제) | 청소도구함        |     | 기타 |  |
|                           |      |           |                  |              |               |                    |              |                  |              | 내부           | 외부  |    |  |
|                           |      |           |                  |              |               |                    |              |                  |              |              |     |    |  |
| 시설관리 내역                   |      | 연월일       | 관리<br>사항         | 금 액<br>(천 원) | 연월일           | 관리<br>사항           | 금 액<br>(천 원) | 연월일              | 관리<br>사항     | 금 액<br>(천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시설<br>설치 지정 및<br>설치내역 |      | 지정<br>여부  | 비상벨<br>(설치수)     |              | CCTV<br>(설치수)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유료화장실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        |   |     |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        |   |     | 3일   |     |     |  |  |
| 신청인                                                                                                      | 상 호(명칭) |   |                                                |  |                 |  |        |  |      |                                |        |   |     |      |     |     |  |  |
|                                                                                                          | 성명(대표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시설현황                                                                                                     | 소 재 지   |   |                                                |  |                 |  |        |  | 관리주체 |                                |        |   |     |      |     |     |  |  |
|                                                                                                          | 관 리 인   |   | (전화번호 : )                                      |  |                 |  |        |  | 설치년도 |                                |        |   |     |      |     |     |  |  |
|                                                                                                          | 규 모     |   | 부 지 : m <sup>2</sup> , 화장실 면적 : m <sup>2</sup> |  |                 |  |        |  |      |                                |        |   |     |      |     |     |  |  |
| 시설내역                                                                                                     | 시 설 내 역 |   | 대변기 수                                          |  |                 |  | 소변기 수  |  |      |                                | 대변기 유형 |   |     |      |     |     |  |  |
|                                                                                                          |         |   | 남자용                                            |  | 여자용             |  | 장애인용   |  | 성인용  |                                | 유아용    |   | 동양식 |      | 서양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 의 시 설 |   | 세면기                                            |  | 에어타올<br>(페이퍼타올) |  | 환풍기    |  | 화장지  |                                | 비누     |   | 방향제 |      |     |     |  |  |
|                                                                                                          |         |   |                                                |  |                 |  |        |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1회 사용료                                                                                                   |         | 원 |                                                |  |                 |  |        |  |      |                                |        |   |     |      |     |     |  |  |
|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p> <p>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p> <p>영등포구청장 귀하</p>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br>1. 화장실 내부 평면도<br>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br>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   |                                                |  |                 |  |        |  |      |                                |        |   |     |      |     |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없 음 |  |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         |       |           |                 |       |       |        |     |
| 대표자                                                                                                                                                               | 상 호(명칭) |       |           |                 |       |       |        |     |
|                                                                                                                                                                   | 성 명     |       |           |                 |       |       |        |     |
|                                                                                                                                                                   | 주 소     |       |           |                 |       |       |        |     |
| 관 리 인                                                                                                                                                             |         |       | (전화번호 : ) |                 |       |       |        |     |
| 시설<br>내<br>역                                                                                                                                                      | 시 설 내 역 | 대변기 수 |           |                 | 소변기 수 |       | 대변기 유형 |     |
|                                                                                                                                                                   |         | 남자용   | 여자용       | 장애인용            | 성인용   | 유아용   | 동양식    | 서양식 |
|                                                                                                                                                                   |         |       |           |                 |       |       |        |     |
|                                                                                                                                                                   | 편 의 시 설 | 세면시설  |           | 에어타올<br>(페이퍼타올) |       | 환 풍 기 |        |     |
|                                                                                                                                                                   |         | 대     |           | 대               |       | 대     |        |     |
| 1회 사용료                                                                                                                                                            |         | 원     |           |                 |       |       |        |     |
|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인</p> |         |       |           |                 |       |       |        |     |